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2년 9월 21일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6.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2. 9. 21(수)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①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 문의) ☎ 044-201-4154
  - ②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 문의) ☎ 02-3786-0624  
☞ 접수) [logis2022@kmaplus.co.kr](mailto:logis2022@kmaplus.co.kr)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ogis2022@kmaplus.co.kr](mailto:logis2022@kmaplus.co.kr))
  - ※ 금년도 등록, 신고에 필요한 증빙 제출서류 일체는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증빙자료 스캔 파일은 pdf, jpg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등록기준
1. 영업점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
2. 시설	가. 면적이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 나.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장비 등	가.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나.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2)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1년 이상 택배 운송에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위 표에서 “직영점”이란 화물을 배송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제2호가목에서 “화물 분류시설”이란 시·도 간에 배송되는 화물을 분류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제2호나목에서 “화물 취급소”란 화물을 상하차하고 이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가목에서 “화물운송전산망”이란 화물의 운송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5.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를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붙임2]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기 등록한 사업자 대상,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시설 및 장비 구비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전자화문서) 제출

구분	기준	제출 증빙자료	비고
영 업 점		1. 본사와 영업점 간의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4.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5.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6. 전경 사진	
시 설	화물 분류시설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3. 공동사용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화물 취급소	1.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3.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장 비 등	전산망 시설	1. 전산장비 내역	
		2. 영업점, 분류시설, 취급소 전산코드	장비 유무 포함
		3. 전산시스템 운영매뉴얼	운송장 사본 포함
		4. 운영현황(홈페이지·앱 등 이용화면)	
	사업용차량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앞장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위수탁계약서	1. 택배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택배사와 영업점, 영업점과 택배기사 간의 위수탁계약서****	

\* 계약관계를 확인 가능한 부분(표지, 쌍방 날인 페이지 등)만 제출 가능

\*\* 기준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입증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적재함 구조변경 내역이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별도 첨부

\*\*\*\* 택배사 - 영업점, 영업점 -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서 샘플 각 1부

※ 화물취급소와 영업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화물취급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회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은 서류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③ 작성양식 : 별지

- 별지 : 영업점, 화물분류시설, 화물취급소, 전산망 시설, 사업용 차량 확보 현황 등

※ 별지 서식은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날인 스캔본 등)와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성명)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소재지)		
영업점 개수		직영점 개수	
화물 분류시설 개소수		화물 취급소 개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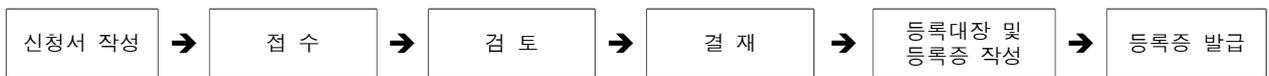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li> <li>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li> <li>「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점이나 화물 분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li> <li>「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li> <li>「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li> </ol>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물 분류시설은 면적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물 취급소 개수는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시설 및 장비 현황

'22. 9. 기준

1. 영업점·직영점 현황(전체)																					
(회사명 : )																					
권역 (시·도)	소재지 (시·군·구)	주소	영업점명	영업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유구분	공동사용	건물		연락처 (소유자)	영업점연락처	집배 송기사수 (명)	운영차량 (대)	일평균 무시간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명)	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명)	일평균 배송량 (상자)	일평균 집하량 (상자)	기사의 월평균 수입 (천원)		
								소유자	임차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영업점·직영점 현황은 사업자의 전체 영업점·직영점 목록을 작성하되, 아래 첨부서류는 5개 이상의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직영점에 대하여 제출

○ 첨부서류

1. 본사와 영업점 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 서류 1부
4. 전경 사진 1부

## 2. 화물분류시설 현황(전체)

(회사명 : )

터미널명	소재지(시·군·구)	상세주소	형태(허브/서브)	영업점수(개소)	집배송차량(대)	소유구분	공동사용	소유자	임차자	연락처(소유자)	터미널연락처	면적(m <sup>2</sup> )		1일평균물동량(박스)	시설형태	분류작업		사무관리자수(명)	현장관리자수(명)	분류작업자수(명)	집배송업자수(명)		
												토지	건물			간선물동량비율(%)	배송물동량비율(%)						

※ 화물 분류시설은 사업자의 전체 분류시설 목록을 작성하되, 아래 첨부서류는 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분류시설에 대해 제출

\* 시설 형태는 완전자동화 1, 반자동화 2, 수작업 3 등으로 구분 기재

\*\* 분류시설 내 인력은 관리자(사무관리직, 현장관리직), 분류작업자, 집배송기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분류시설의 화물발송 형태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구간 간선운송 물동량(다른 분류시설로 발송)과 관할 영업점·직영점에서 배송하기 위한 배송물동량의 비율로 표기

○ 첨부서류

1.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 서류 1부

2. 전경 사진 1부



4. 전산망 시설										
(회사명 : )										
위탁 운영 여부	전산 장비 내역	영업점 전산코드	분류시설 전산코드	취급소 전산코드	운영현황					기타
					전산망 화면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주소	앱 화면	운송장 사본	
실시간 화물이력 추적 운영 현황										
구간	화주 집화	발송취급소 (대리점)	지역 분류장	거점 분류장	도착취급소 (영업점)	도착화주	실시간 검색	고객 확인		
확인 가능 여부										

○ 첨부서류

1. 전산 장비 내역 1부 (전산장비 리스, 시스템 운영 위탁 시 관련 계약서 포함)
2. 영업점·분류시설·취급소 전산코드(장비 유무 포함) 엑셀파일 1부
3. 전산망 운영매뉴얼 1부
4. 운송장 사본 1부
5. 홈페이지·앱 등의 회사용, 고객용 페이지 캡처화면 각 1부

※ 작성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숫자로 표기)

- 1 : 제출
- 2 : 미제출

5. 사업용 차량운영 현황														
5-1. 집배송차량 운영 현황														
연번	영업소 명	적재함 구조	차량 번호	영업용 차량(바,사,아,자)			택배전용(배)		기사정보			허가 관청	등록 년월일	비고
				직영	지입	위탁	직영	위탁	이름	생년월일	운수 종사 자격번호			

- ※ 차량 작성 기준 : 1.5톤 미만 밴형, 탑장착차량인 사업용차량 기준
- ※ 영업점·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아래 첨부서류는 100대 이상에 대해 제출
  - 첨부서류(100대 이상) - 첨부서류를 제출한 차량인 ‘비고’란에 ‘서류제출’ 표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용차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5-2. 간선 운송차량 운영 현황						
연번	적재중량 (톤수)	용도	사업자		운송위탁계약	비고
			직영	지입		
1	1.5~2.5톤	배송용				
		간선용				
2	2.5~3.5톤	배송용				
		간선용				
3	4.5~8톤	배송용				
		간선용				
4	8.5~11톤	배송용				
		간선용				
5	12톤 이상	배송용				
		간선용				
6	기타	배송용				
		간선용				

- ※ 차량 작성 기준 : 1.5톤 이상 차량으로서 해당란에 운영 차량대수로 기재
- ※ 2022년 상반기 월평균 운영 차량 대수로 기재
  - \* (직영) 차량·영업용 번호판은 본사 소유, 직영 기사를 고용하여 운송
  - \*\* (지입) ①영업용 번호판은 본사 소유, 차량은 기사 소유, ②차량·영업용번호판은 본사 소유, 기사에게 경영을 위탁
  - \*\*\* (운송계약) 사업자와 타 운송사업자 간 계약을 통한 운송위탁

※ 운송장 제작 시 참고사항 (택배표준약관 참조)

**택배표준약관 제7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필수)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필수)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필수)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필수)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필수)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화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필수)